# 예 산 총 칙

2021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|---|---|
| 합 계 | 572,800,000 | 17,184,000 |
| 일반회계 | 531,020,000 | 15,930,600 |
| 특별회계 | 41,780,000 | 1,253,400 |
| 기타특별회계 | 41,780,000 | 1,253,400 |
|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| 1,010,000 | 30,300 |
|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| 121,000 | 3,630 |
|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| 2,687,000 | 80,61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41,000 | 1,230 |
|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| 2,596,000 | 77,880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| 64,000 | 1,920 |
| 치수사업특별회계 | 534,000 | 16,020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5,997,000 | 179,910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28,730,000 | 861,90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,365,031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,831,914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